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

■ 최보운의원안(의안번호 제2210035)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예금자보호
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화재로 인
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2.
3.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서 위원·임원 등의 해촉·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대상 법률 및 내용 >

법률명	현행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 위원)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분쟁조정위 위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 위원회법	(금융위 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 및 감사)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서민금융법	(서민금융진흥원 임원, 휴면예금관리위·신용회복위 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 기금법	(신용보증기금 임원)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험공사 임원, 예금보험위 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한국산업 은행법	(산업은행 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한국자산관리 공사법	(자산관리공사 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주택금융공사 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화재보험법	(화재보험협회 임원)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개정 대상 법률들은 금융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및 산업은행 임원 등의 임기 중 해촉·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¹⁾, 그 해촉·해임의 주요 사유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됨.

○ 이는 위원·임원 등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기관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제정안은 해촉·해임 사유의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대체하여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참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 대신 ‘심신쇠약’ 또는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가 다수 있음.

법률명	유사 입법례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제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62조)
감사원법	(감사위원)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제8조)
국세기본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67조)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13조)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6조의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소속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74조의13)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8조)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위원)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제10조의2)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4조)

□ 다만, 제정안은 사고 또는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은 본인 외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워²⁾, 해촉·해임 대상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해당 직위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측면을 고려해,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요건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제정안과 같이 시행할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진단서 제출에 본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촉·해임할 수 없어,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임기 중에 해촉·해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 5. (생략)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이하 생략)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대체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지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요건을 추가하는 안은 기관의 공백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해촉·해임 규정을 둔 본래 취지를 고려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 ----- -----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 지명철회·위촉해제)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 지명철회·위촉해제) ----- ----- ----- -----.

축을 해제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5. (생략)	-----.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5.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3. (생략) ② (생략)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2. (생략) 3. <u>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u>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u>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u>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u>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 3. (생략) 4. <u>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u>	제18조(임원의 해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u> 3. (생략) ② (생략)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 ----- -----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u>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생략) 2. <u>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u>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u>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0조(임원)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u> 6. (생략)	제20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6. (현행과 같음)